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화장품 법령이 개정·시행(2022.2.18.) 되어 '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'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- **화장품법 제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미해당자 및 '22년 교육을 이미 수료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**

- **또한, '22년 이전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**

◈ **[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]**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**최초 및 보수교육**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**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**하여야 하며, **미이수 시**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[별표2]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**과태료**(50만원)**가 부과**됩니다.

▸ 최초교육: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(다만,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)

▸ 보수교육: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(다만,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)

▸ 교육기관: 대한화장품협회(02-785-7984)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02-2162-8058)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(031-8055-8753)

※ 기타 관련 문의: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의료제품안전과 062-602-1450, 1541, 1460)